

2017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

2017. 7. 18.

서울특별시 중구
(행정관리국)

2017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의안번호	2017-3		
일시 및 장소	○ 일 시 : 2017년 7월 18일 (화요일) 10:30 ○ 장 소 : 구청 지하1층 통합안전센터 내 회의실		
참석위원	○ 위 원 장 : 행정관리국장 ○ 내부위원 : 민원여권과장, 총무과장 ○ 외부위원 : 임규철, 주창범, 김지혜		
회의 진행순서	1. 개회선언 2.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소개 3.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방법 설명 및 심의 4. 폐회선언		
상정안건	의안번호	상정부서	심의안건
	2017-3	환경과	필동지역 폐수배출 시설 설치허가 47개 업체별 각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청 서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

	의안번호	의결내용
심의결과	2017-3	기각
		○ 「필동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47개 업체별 각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청 서류」는 청구인의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어야 할 제3자의 권익을 비교형량 검토 한 바, 제3자의 권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<u>기각</u> 결정함

〈발언요지〉

□ ○○○ 간사

지금부터 「2017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」를 시작하겠습니다.

- 오늘 심의 안건은 「필동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47개 업체의 설치 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」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임.

□ ○○○위원장

지금부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땡땡땡 - (의사봉 3타)

- 먼저 처리부서에서 상정안건의 취지 및 결정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람.

□ 처리부서 (○○○ 수질보전팀장)

- 청구인은 필동지역에 신고 된 폐수배출시설 47개 업소에 대해 신청서, 검토의견서, 결재서류, 허가증 사본, 설치장소 변경 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함.
- 청구인이 요청한 서류에 대해 필동지역 폐수배출시설 신고 처리된 47개 업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서류 일체 중 현재 관련법령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처리함.
-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 하였고,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는 법적근거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선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1975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처리한 건을 대상으로 현재 법적기준에서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
- 또한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의 목적과 취지에서 볼 때 청구인은 폐수배출시설(인쇄시설) 설치신고를 득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되는 바, 제3자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청서, 검토의견서, 결재서류, 허가증 사본, 설치장소 변경 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과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요청함.

□ ○○○ **위원**

-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.
- 누가 이의제기를 했고, 어떤 관계인지,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?
- 기존의 47개 업체가 어떻게 해서 허가를 받은 것인지?
- 현재 법규상으로 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까?

□ **처리부서 (○○○ 주무관)**

- 청구인은 김창석이고, 인쇄업자임.
- 폐수배출시설 허가 신청을 했는데 현행법상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려를 함.
-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과 동시에 47개 업체의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음.
- 1975년부터 2013년까지 47개 업체는 현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임.
- 행정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있음.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쇄업체에 폐쇄명령을 내렸음.

□ ○○○ **위원**

- 청구인이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은?

□ **처리부서 (○○○ 주무관)**

- 기존에 허가가 나가 있는 47개 업체의 신청서, 검토의견서, 결재서류, 허가증 사본 등임

□ ○○○ **위원**

- 현행법상으로 이 지역은 추가로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까?
- 47개 업체는 현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허가가 나갔다는 것입니까?

□ **처리부서 (○○○주무관)**

- 2011년 이후부터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임.

□ ○○○ **위원장**

- 47개 업체는 청구인이 청구한 47개 업체의 서류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?

□ **처리부서 (○○○ 주무관)**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3자에게 의견 청취를 하였음.
- 2017년 6월 현재 시설폐쇄 2개소를 제외한 45개소 중 비공개 19개소, 공개 1개소, 의견 없음 25개소임.
- 의견 없음 25개소는 소극적인 비공개 표명이라고 생각함.
- 알 수 없는 불특정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됨.

□ ○○○ **위원**

- 전반적으로는 이견이 없음.
-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법규는 왜 부존재임?
-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타부서의 관련 법규는 찾아서 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?
-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존재 처리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됨.

□ **처리부서 (○○○ 주무관)**

- 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. 협조부서인 건축과, 도심재생과 등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음.
- 1973년~2011년 허가 당시 다양한 법률이 있음. 협조부서에 처리 당시의 법률을 찾아서 만들어준다는 개념임.

☐ ○○○○ **위원**

- 법제처 법령집 사이트에서 연혁법률 확인가능 함.

☐ ○○○○**위원**

- 그 당시의 법률은 바뀌어서 중요하지 않음.
- 현행법이 중요함. 과거의 법은 아무 의미가 없음.
- 기존의 47개 업체의 주민번호, 주소 제외하고 그 당시의 어떤 근거로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었고, 지금은 현행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어떠합니까?

☐ **처리부서 (○○○주무관)**

- 영업정보, 개인정보를 다 지워버리면 업소명, 대표자명, 전화번호만 있음.

☐ ○○○○ **위원**

- 그 당시의 검토의견서 없습니까?

☐ **처리부서 (○○○주무관)**

- 당시에는 별도의 검토의견서는 없음.

☐ ○○○○ **위원장**

- 업체가 47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? 공개되어 있습니까?

☐ **처리부서(○○○ 주무관)**

- 업무담당자가 엑셀 파일로 관리하고 있음.
- 1차적으로 필동지역의 업소 현황 정보(업소명, 주소, 대표자, 전화번호 정보)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, 해당 자료는 이미 제공함.

□ ○○○**위원**

- 허가 나간 그 당시의 결재서류를 지울 것을 지우고 공개해 주되, 당시의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찾아보시라고 안내해 주는 것은 어떠합니까?

□ **처리부서 (○○○ 주무관)**

- 그런 내용은 이미 전화상으로 설명을 드렸음.

□ ○○○ **위원장**

- 그것은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?

□ **처리부서 (○○○ 주무관)**

- 해당 정보공개청구건의 이익형량을 비교 검토해 봄
-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공개를 할 것인지, 비공개를 원하는 제3자의 기본권을 고려해서 비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비교 검토해보니,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□○○○○**위원**

- 첨부된 자료가 청구인인 요구한 47개 업소의 자료입니까?

□ **처리부서 (○○○주무관)**

- 필동지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요구한 자료가 어떤 형식인지 샘플로 첨부한 것임.

□ ○○○**위원**

-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부서 검토의견서를 문서화해서 내보는 것입니까?
- 제3자의 폐수배출시설 신청서류는 실익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는데, 해당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허가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?

☐ **처리부서 (○○○ 주무관)**

-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.
- 제3자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폐수배출신고를 득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임
- 해당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 줄 필요성이 미비함.

☐ ○○○ **위원**

- 제3자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법 집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?

☐ **처리부서 (○○○ 주무관)**

- 폐수배출신고를 득하는 것과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임

☐ ○○○ **위원**

- 기존의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?

☐ **처리부서 (○○○ 주무관)**

- 그러함.

☐ ○○○**위원**

- 가능한 업체들은 허가당시의 문서의 비공개 정보를 다 지우고 제공해 주고, 당시의 허가사항은 이렇다. 하지만 현재는 이렇다. 라는 것을 안내함으로써 청구인을 존중해 주는 구청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어떠합니까?

☐ ○○○ **위원**

- 그렇게 제공해주는 것이 가능합니까?

□ **처리부서 (○○○ 주무관)**

- 중요한 것은 공개에 대한 실익이 없고, 오히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,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.

□ **○○○위원**

- 순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건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

□ **○○○ 위원장**

심의 안건은

- 위원님들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땅땅땅 - (의사봉 3타)